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12.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12. 2

다. 상정일자 : 2004. 12. 13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허길중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안 제2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배우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 제2항, 안 제3조 제1항)
-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경우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 비율을 적용하여 감면토록 규정(안 제29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개정 조례안은 종합토지세 경감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는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는 감면 조례안으로서
-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 임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하고,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을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증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며,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의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의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